##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8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병주·허 영·황 희

부승찬 • 박선원 • 김민석

추미애 · 안규백 · 정성호

김남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 대여·양도 권한을 국방부장관, 즉,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외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나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대여·양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있음.

외국에 대여·양도하는 무기지원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기지 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 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 결산 심의권한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외국에 대한무기(제3조에 따른 전비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여·양도 기준과 전년도 국가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제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
	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외국에 대한 무기(제3조에
	따른 전비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
	<u>여・양도 기준과 전년도 국가</u>
	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